

부분상환금 반영 순서에 따라 총당하기로 합니다.

13. 채무자의 책임 면제가 아닌 대출업체의 유예 결정. 대출업체가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금액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금을 변경하는 경우,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지분 승계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업체는 최초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지분 승계인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 승계인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거나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금액의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상환금 변경을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업체가 권리 또는 해결책 행사를 유예하는 것(대출업체가 제 3 자, 제 3 주체 또는 채무자의 지분 승계인으로부터 납부금을 수락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대출업체의 권리 또는 해결책이나 그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4. 연대책임, 서명인, 승계인과 의무 양도.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 및 책임은 연대적입니다. 그러나 본 담보문서에 서명했지만 어음에는 서명하지 않은 채무자는 (a)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담보문서의 조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해당 채무자의 지분을 저당, 이전, 양도하기로 하고, (b)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관련 불완전 권리(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 기타 주택압류 면제권 등)를 포기하기로 하고, (c)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타 기부금, 임대료, 기타 수익을 대출업체 양도하기로 합니다. 다만, (d)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지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 아울러 채무자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해당 채무자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업체 및 다른 채무자가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의 조건과 관련한 합의 사항의 연장, 변경, 유예 또는 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섹션 19의 조항을 전제로,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를 서면으로 모두 인수하고 대출업체의 승인을 받은 채무자의 지분 승계인은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편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출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와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5. 대출 비용.

(a) **세금 및 홍수범람원 판정 수수료.** 대출업체는 채무자에게 (i) 본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체가 이용한 부동산세 확인 또는 보고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요금 및 (ii) (A) 홍수 지역 판정, 인증, 추적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요금 또는 (B) 홍수 지역 판정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요금 및 그러한 판정 또는 인증에 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재조정(remapping) 또는 유사한 변경 발생 시 후속 요금 등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홍수범람원 판정과 관련하여, 본 대출 기간 중 언제라도 연방재난관리청 또는 그 후속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b) **채무불이행 비용.**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대출업체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이용한 서비스의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i)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ii) 부동산 점검, 가치평가, 중재, 손실 완화 수수료, (iii) 기타 관련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c) **수수료의 허용 가능성.** 기타 수수료와 관련하여, 본 담보문서에서 특정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이러한 수수료의 부과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 또는 준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d) **초과징수 환급.** 준거법에서 대출 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이자 또는 기타 대출 비용이 최종적으로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i) 그러한 대출 비용은 허용된 상한까지 인하되며, (ii)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여 이미 징수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됩니다. 대출업체는 해당 환급금을 본 어음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 잔액에 충당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원금 잔액에 충당하여 원금이 감소한 경우, (어음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부분 중도상환으로 취급됩니다.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무자가 환급금의 직접 지불을 수락하는 것은 해당 초과징수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소송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16. 통지, 채무자의 실 거주지 주소. 본 담보문서와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대출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a) 채무자에 대한 통지. 준거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담보문서와 관련된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는 (i) 일급우편으로 발송됐을 때, (ii) 일급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섹션 16(b)의 정의에 따름) 이외의 수단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통지 주소(섹션 16(c)의 정의에 따름)로 실제로 전달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준거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채무자 1인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 전원에 대한 통지로 여겨집니다. 본 담보문서에서 요구하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준거법에서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의 요건을 준수하면 본 담보문서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b) 채무자에 대한 전자적 통지. 준거법에서 다른 전달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는 (i) 대출업체와 채무자가 서면으로 동의했고, (ii) 채무자가 채무자의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주소("전자적 주소")를 대출업체에 제공했고, (iii) 대출업체가 채무자에게 일반우편이나 전자적 방식 대신 다른 비전자적 방식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iv) 대출업체가 그 밖의 준거법을 준수했다면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전자적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 담보문서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보낸 통지는 보낸 시점에 채무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나, 그러한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출업체가 인지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진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출업체가 인지한 경우, 대출업체는 해당 내용을 일반우편 또는 다른 비전자적 방식으로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대출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전자적 방식의 통지 수신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c) 채무자의 통지 주소. 채무자가 다른 주소를 지정하여 대출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보낼 주소("통지 주소")는 부동산 주소로 합니다. 대출업체와 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의 통지 제공에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전자적 주소를 통지 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지 주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채무자의 전자적 주소가 통지 주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포함함) 이를

대출업체에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가 채무자의 통지 주소 변경에 대한 보고 절차를 별도 지정할 경우, 채무자는 해당 절차를 통해서만 통지 주소 변경을 보고하기로 합니다.

(d) 대출업체에 대한 통지. 대출업체에 대한 통지는 대출업체가 채무자에게 달리 통지하여 다른 주소(전자적 주소를 포함)를 지정하지 않는 한 본 담보문서에 명시된 대출업체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일반우편으로 우송되어 제공됩니다. 본 담보문서와 관련된 통지는 대출업체가 지정한 주소(전자적 주소를 포함)에서 대출업체가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만 대출업체에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담보문서에서 요구하는 대출업체에 대한 통지를 준거법에서도 요구하는 경우, 준거법의 요건을 준수하면 본 담보문서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e) 채무자의 실 거주지 주소. 지정된 통지 주소 외에도, 채무자의 실 거주지 주소가 부동산 주소와 다른 경우, 채무자는 실 거주지 주소를 대출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대출업체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17. 준거법, 분리 가능성, 해석 규칙. 본 담보문서는 연방법 및 알래스카주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담보문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는 준거법의 요건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의 조항이 준거법과 상충하는 경우, (i) 해당 상충 조항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i)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상충 조항이 준거법을 준수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준거법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 합의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있으나, 것처럼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을 계약에 기반한 합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담보문서에 따라 준거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조치는 당시 시행 중인 준거법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본 담보문서에서 사용된 (a) 단수 형태의 단어는 복수형을 의미 및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 "할 수 있다(may)"라는 단어는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는 조동사입니다. (c)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섹션"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담보문서에 포함된 섹션을 가리킵니다. (d)

제목과 요약제목은 참조 시 편의를 위해 삽입되었으며, 이 담보문서나 특정 섹션, 단락 또는 조항의 범위나 의도를 정의, 제한 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18. 채무자 문서 제공. 각 채무자에게는 어음 및 본 담보문서가 1 부씩 제공됩니다.

19..부동산 또는 채무자의 수익적 지분 양도. 본 섹션 19 의 목적에 한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 또는 수익적 지분을 의미하며, 이는 채권증서, 계약증서, 할부매각계약 또는 에스스로 계약으로 양도된 수익적 지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의도는 미래에 채무자가 구매자에게 권원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 또는 부동산의 지분이 대출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또는 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니고 채무자의 수익적 지분이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모든 금액 전액을 즉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업체는 그러한 권리 행사가 준거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출업체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대출업체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해당 통지는 섹션 16 조에 따라 해당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30 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모든 금액을 채무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기간의 만료 시점이나 그 이전에 이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대출업체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통지나 요구 없이 본 담보문서에서 허용하는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결책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징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 비용은 (a)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b) 부동산의 점검 및 가치평가 수수료 및 (c)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 기한이익의 상실 후 채무자의 대출 원상회복 권리. 채무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 부동산의 압류 매각 5 일 전 또는 (b) 준거법이 채무자의 원상회복 권리 종료와 관련하여 명시하는 기타 기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채무자는 언제든지 대출을 원상회복하고 본 담보문서의 집행을 중지시킬 권리를 갖습니다. 이 원상회복 권리는 섹션 19 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의 원상회복을 위해, 채무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a)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 담보문서 및 어음에 따라 기한이 도래했을 모든 금액을 대출업체에 지불, (bb)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따른 기타 약정 또는 동의 사항에 대한 채무불이행 해소, (cc)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의 지불. 그 경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ii) 자산 점검 및 가치평가 수수료, 및 (iii)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그리고 (dd) 대출업체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이나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와 관련하여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는 달리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출업체는 채무자에게 대출업체가 선택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 금액 및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aa) 현금, (bbb) 우편환, (ccc) 보증수표, 은행수표, 자기앞수표(예금을 보장하는 기관인 미국 정부기관, 대행기관 또는 법적 주체에서 이러한 수표를 발행한 경우) 또는 (ddd) 전자자금이체. 채무자가 대출을 원상회복하는 즉시 본 담보문서 및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의무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1. 어음의 매각. 어음 또는 어음의 일부 지분은 본 담보문서와 함께 1 회 이상 매각 또는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또는 기타 양도 시, 본 담보문서에 따른 대출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출업체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22. 대출 관리회사. 대출업체는 대출 관리회사 또는 하청 관리회사와 같이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대리인을 통해 본 담보문서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대출 관리회사 또는 대출업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대출 관리회사는 어음 기간 동안 1 회 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리회사는 어음의 소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출 관리회사는 (a)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정기상환금 및 기타 금액 징수, (b) 기타 담보대출 서비스의 제공 의무

수행, (c) 대출업체를 대리하여 어음, 본 담보문서, 준거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관계된 권리와 권한을 가집니다. 대출 관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대출 관리회사의 이름과 주소, 납부금 지불 주소, 서비스 제공 이전 통지와 관련하여 RESPA 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명시한 변경 통지가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제공됩니다.

23. 불만 통지. 채무자 또는 대출업체가 (섹션 16 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반 의혹을 통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하기 전까지, 채무자 또는 대출업체는 (a)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따른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b) 상대방이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의 조항을 위반했음을 주장하는 사법적 조치를 (개별 소송 당사자 또는 집단 소송의 구성원으로서) 개시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거법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기해야 할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본 섹션 23 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26(a)에 따라 채무자에게 제공된 채무불이행 통지 및 섹션 19 에 따라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하면 본 섹션 23 의 통지 및 시정조치 기회 조항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24. 유해물질.

(a) 정의. 본 섹션 24 에서 언급하는 용어 (i) "환경법"이란 건강,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권의 준거법을 의미하고, (ii) "유해물질"에는 (A) 환경법에서 독성이 있거나 유해 물질, 오염 물질 또는 폐기물로 정의하는 물질 및 (B) 휘발유, 등유, 기타 가연성 또는 독성 석유 제품, 독성 살충제 및 제초제, 휘발성 용매, 석면 또는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물질, 부식성 물질 또는 제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고, (iii) "환경 정화"에는 환경법에 정의된 대응 조치, 개선 조치, 제거 조치가 포함되고, (iv) "환경 조건"이란 환경 정화 조치를 야기, 유도, 촉발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b)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채무자는 부동산 위에 또는 그 내부에 유해물질의 존재, 사용, 배출, 보관, 방출을 야기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을 방출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i) 환경법 위반, (ii) 환경 조건의 형성 또는 (iii) 유해물질의 존재, 사용 또는 방출로 인해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거나 다른 자가 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로 합니다. 앞의 두 문장은 일반적인 거주와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소량의 유해물질(소비재의 유해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부동산에 존재, 사용 또는 저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통지, 개선 조치. 채무자는 대출업체에 다음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i) 채무자가 인지한 부동산 및 유해물질 또는 환경법과 관련된 정부 또는 규제 기관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한 조사, 청구, 요구, 소송, 기타 조치, (ii) 유해물질의 유출, 누출, 배출,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상태, (iii)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존재, 사용 또는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태. 채무자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제거 또는 기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부 또는 규제 기관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환경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합니다. 본 담보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대출업체에 환경 정화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5. 채무자가 전자서명한 전자어음. 본 대출에 대한 부채를 증명하는 어음이 전자어음인 경우, 채무자는 대출업체에 다음을 인정 및 진술합니다. 채무자는 (a) 종이 어음 서면에 직접 서명하는 대신 채무자가 선택한 전자서명("채무자의 전자서명")으로 전자어음에 서명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 및 의도했으며, (b) 채무자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어음에 서명한다는 명시적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c) 채무자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어음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어음의 조건에 따라 전자어음에서 증명하는 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d) 채무자의 전자서명으로 전자어음에 서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전자어음의 조건에 따라 전자어음에서 증명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음에 서명했습니다.

표준 외 약정 사항. 채무자 및 대출업체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약정 및 동의합니다.

26. 기한이익의 상실, 해결책.

(a) 채무불이행 통지. 대출업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 이전에 본

어음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각 개인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각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단, 준거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가 섹션 19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때 그러한 채무불이행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외에 (i) 해당 채무불이행, (ii) 해당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iii) 해당 채무불이행이 해소되어야 하는 기한(채무자에게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30 일 이상 경과한 일자 또는 준거법에서 달리 명시한 기한), (iv) 통지에 명시된 기한 또는 그 이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금액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과 부동산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v) 기한이익의 상실 후 대출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및 (vi) 채무불이행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한이익의 상실 및 매각에 대한 채무자의 다른 방어수단을 주장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등이 명시됩니다.

(b) 기한이익의 상실, 매각권, 비용. 채무불이행이 통지에 명시된 기한 또는 그 이전까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출업체는 추가적인 해소 요구 없이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모든 금액 전액을 즉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매각권 및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기타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본 섹션 26에 제시된 해결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i)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ii) 부동산의 점검 및 가치평가 수수료 및 (iii)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의 유치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거나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어음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결정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자가 본 섹션 26에 기술된 바에 따라 부동산 매각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출업체가 본 섹션 26의 매각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는 그러한 사법적 부동산 압류를 막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매각 통지, 부동산의 매각. 매각권이 행사되는 경우, 신탁관리자는 채무불이행 상황 및 부동산 매각을 초래할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작성하고 해당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치한 각 관할권 등록소에 그러한 통지를 기록합니다. 대출업체 또는

신탁관리자는 준거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통지 사본을 해당 개인에게 우송하기로 합니다. 신탁관리자는 준거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개인에게 매각 통지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준거법에서 허용한 시기에 준거법에 따라 신탁관리자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요구 없이 하나 이상의 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통지에서 지정된 조건 및 신탁관리자가 결정하는 기타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공개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니다. 신탁관리자는 매각이 예정되었던 시간 및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필지 전부나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 대출업체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d) 신탁증서, 매각 수익금. 신탁관리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또는 보증 없이 부동산 양도 신탁증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신탁증서의 설명 조항은 해당 증서에서 진술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일차적(prima facie) 증거가 됩니다. 신탁관리자는 매각 수익금을 다음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i) 합리적인 신탁관리자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매각 경비, (ii)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모든 금액, (iii)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자.

27. 재양도.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모든 금액이 지불된 즉시 대출업체는 부동산의 재양도(담보 해제)를 신탁관리자에게 요청하고, 본 담보문서 및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부채를 증명하는 모든 어음을 신탁관리자에게 이전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요청에 따라 신탁관리자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집단에 보증 없이 부동산을 재양도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해당 재양도와 관련된 기록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출업체는 그러한 자 또는 집단에 부동산 재양도를 위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수수료가 서비스를 수행한 제 3 자(신탁관리자 등)에게 지불되고 준거법에서 해당 수수료의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8. 대체 신탁관리자. 대출업체는 수시로 직접 또는 대출 관리회사를 통해 신탁관리자를 해임하고 본 담보문서에 따라 임명된 신탁관리자의 후임 신탁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없이 후임 신탁관리자는 본 담보문서 및 준거법에 따라 신탁관리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권원, 권한, 의무를 승계합니다.

29. 전액 상환을 요구할 권리. 본 담보문서의 섹션 20 또는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통지가 과거 2 회 이상 등록되었고 해당 채무불이행이 준거법에 따라 해소된 경우, 대출업체는 섹션 20 에 따른 후속 채무불이행 해소의 수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본 담보문서의 부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가 부동산 압류를 초래하는 후속 채무불이행의 해소를 수락하는 것은, 차후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해소를 거부하고 부동산 압류를 진행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0. 유치권의 만기. A.S.§34.20.150 또는 유사한 법령과 관련한 본 신탁증서의 만기는, 본 신탁증서에 의해 담보된 모든 부채 및 기타 의무가 완전히 충족된 일자 또는 본 담보문서의 체결로부터 50 년 후 가운데 더 나중인 시기로 합니다.

31. 해결책의 통지. 어음의 각 서명인은 어음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적 의무를 지며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대출업체는 AS 09.45.170-09.45.220 에 따른 담보대출 또는 신탁증서의 사법적 부동산 압류 전후에 어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어음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충족을 위해 해당 서명인 개인에 대한 판결을 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채무자는 본 담보문서 및 채무자가 서명하고 등기된 특약에 포함되는 조건 및 약정 사항을 수락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인:

_____ (인)
- 채무자

_____ (인)
- 채무자

_____ [승인을 위해 이 선 아래는 비워두십시오] _____